

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 서

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2852호, **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5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II.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1. 제안이유

- 가.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내역 변경 및 '25년 도로사업소별 예상 도로굴착복구 물량 고려하여 2025년 수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
- 나.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차 운용계획 변경 심의로 사업비 증액에 따른 정책사업비 37,566백만원에서 41,443백만원으로 3,877백만원 증액, 예치금 26,320백만원에서 22,443백만원으로 3,877백만원 감액한 바 있음 (20% 미만 변경)

나. 금번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반영 및 추가 사업비 증액 변경에 따라 수입계획 상 예치금회수 금액이 21,976백만원에서 40,647백만원으로 18,671백만원 증액, 지출계획 상 '25년 상반기 자치구 도로관리심의 결과에 따른 도로사업소별 예상 도로굴착복구 물량 고려하여 정책사업비 41,443백만원에서 62,138백만원으로 20,695백만원 증액, 그에 따른 예치금 22,443백만원에서 20,419백만원으로 2,024백만원 감액하고자 함(20% 초과 변경)

다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역

<수입계획> (단위 : 백만원)					<지출계획> (단위 : 백만원)				
구분	당초계획 (A)	1차변경 (B)	2차변경 (C)	증감 (C-A)	구분	당초계획 (D)	1차변경 (E)	2차변경 (F)	증감 (증감률) (F-D)
계	63,901	63,901	82,572	18,671	계	63,901	63,901	82,572	18,671
예치금회수	21,976	21,976	40,647	18,671	비용자성사업비	37,566	41,443	62,138	24,572 (65.4%)
이자수입	796	796	796		기본경비	15	15	15	
기타수입	41,129	41,129	41,129		예치금	26,320	22,443	20,419	△5,901 (△22.4%)

라. 2025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(지출부문)

(단위 : 백만원)					
정책·단위·세부사업·편성목	당초계획 (A)	1차변경 (B)	2차변경 (C)	증감 (C-A)	증감률
계	63,901	63,901	82,572	18,671	
도로시설물 관리	37,566	41,443	62,138	24,572	65.4%
도로굴착 복구(도로굴착복구기금)	37,566	41,443	62,138	24,572	65.4%
도로굴착복구공사	37,136	41,013	61,708	24,572	65.2%
시설비및부대비	37,136	41,013	61,708	24,572	65.2%
도로굴착복구시스템 개발 및 유지운영	430	430	430		
일반운영비	430	430	430		
재무활동	26,320	22,443	20,419	△5,901	△22.4%
보전지출	26,320	22,443	20,419	△5,901	△22.4%
여유자금예치	26,320	22,443	20,419	△5,901	△22.4%
예치금	26,320	22,443	20,419	△5,901	△22.4%
행정운영경비	15	15	15		
기본경비	15	15	15		
기금관리비	15	15	15		
일반운영비	15	15	15		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「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Ⅲ. 검토의견¹⁾

- 서울특별시는 지난 1989년, 도로굴착복구공사,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,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·연구·감독업무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운용하고 있음
-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'24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**예치금회수**가 186억 7,100만원 증가하여 수입계획을 변경하고,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도 수·지 균형을 이루기 위해 변경이 필요한 바,
 - 정책사업인 **재무활동**은 당초 지출계획(263억 2,000만원)보다 △59억 100만원 감액한 204억 1,900만원으로 지출계획하고, 다른 정책사업인 **도로시설물 관리**는 당초 지출계획(375억 6,600만원) 보다 245억 7,200만원 증액된 414억 4,300만원을 지출계획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²⁾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
 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'24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수입계획에 반영하고, 이와 연동된 지출계획도 2개 정책사업에 대한 지출계획을 증·감하여 지출계획한 것으로
 - 지출계획의 정책사업인 **도로시설물 관리**는 6개 도로사업소별 도로굴착 복구공사비를 증액하고자 당초 지출계획(375억 6,600만원)보다

1) 검토보고서의 경우,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

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65.4%, 245억 7,200만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

- 또 다른 정책사업인 **재무활동**의 경우에는 당초 지출계획(263억 2,000만원)보다 △22.4%, △59억 100만원 감액한 204억 1,900만원으로 지출계획하려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
- 기금의 경우, 직전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여유재원이 발생되면 당해연도 지출계획중 예치금 항목에 여유재원을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운용형태이나,
 - 동 지출계획은 '24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여유재원(186억 7,100만원)이 발생하였음에도 **재무활동**은 당초 지출계획보다 △59억 100만원 감액하여 지출계획하고, 다른 정책사업(**도로시설물 관리**)은 당초 지출계획보다 증액(245억 7,200만원)하여 지출계획 한 바,
 -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「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」에 명시된 동 기금의 용도³⁾를 고려하면 정책사업인 **도로시설물 관리**에 '24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여유재원을 증액하고자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 - 다만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이나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 등에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재원을 지출계획중 예치금에 우선 계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없어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하는 것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,

3) 「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」

제5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.

1. 도로굴착복구공사
2.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(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)
3.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, 연구, 감독업무
4.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

- 기금은 1차적으로 재원조성을 통해 특정한 행정목적은 달성하고자 조성·운용하는 것으로서 예치금을 당초 지출계획보다도 감액할 경우, 다음 연도 기금운용재원에 대한 한정성을 미리 사실상 확정하는 행위일 수 있어 기금운용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